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11
----------	------

2016년 9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8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9월 2일 상정 · 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III.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1. 개정취지 및 일부개정 필요성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우선, 동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으로 전부 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법 제명 변경 및 근거규정 수정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2015. 7. 1 시행)으로 ‘지방성 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성평등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명문화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본 개정안은, 이상의 변화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인바, 이를 위한 개정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정의 규정과의 충돌 문제, 현행조례 규정과 모순 문제, 그밖에 법체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2. 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 과 같음.

<표 1.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상위법근거 수정 및 성 평등 용어 통일적 사용	제1조(목적)	상위법 제명변경사항 반영(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의2(정의)	상위법에 맞추어 정의규정 신설
	제2조(시의 책무)	상위법 제명변경사항 반영(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성평등주간 행사 등)	상위법 근거 규정 수정
	제2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성평등 용어 변경 (여성발전기금→성평등기금)
	제5장(성평등 기금)	성평등 용어 변경 (제명: 여성발전기금→성평등기금)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성평등 용어 변경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등) 성평등 용어 변경(여성정책→성평등정책)
	제42조(사전협의)	성평등 용어 변경(여성정책→성평등정책)
성평등위원회 기능 추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평등위원회 기능 추가 및 보완
	제12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세분화 및 각 분과위원회별 기능 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포함)
법령 개정사 항을 반영한 조례 내실화	제5조(성평등정책시행계획 수립)	상위법 근거규정 수정 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성평등시행계획 추진체계 내실화 등
	제18조의2(성인지교육)	상위법에 맞추어 성인지교육 규정 신설
기타 자구수정	제40조의2(준용)	자구수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 3. 조문별 검토의견

#### 가. 법상 용어 정의와의 불일치 및 불명확한 정의 규정 문제 (안 제1조의2 관련)

- 개정안 제1조의2(정의)에서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성평등’ ‘성희롱’ , ‘성주류화’ 대한 정의를 다음의 <표>와 같이 신설 · 규정함.

##### <신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는 것임<sup>1)</sup>.

1)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70. 참조

-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제출된 개정안에서의 정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우선, 제1호의 “성평등” 용어에 대한 뜻은, 법 제3조제1호의 “양성평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임. 그러므로 동일한 뜻에 대하여 상위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여기 개정안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임.
- 이런 점에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상위법과 조례상 용어의 해석(정의)이 동일한 가운데 그 용어만 다르게 함으로써, 법률 용어에 대하여 상당한 혼동을 갖게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의 정의와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정의는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성평등’ 기본조례 제명을 유지하면서 상위법과의 관계설정을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상기의 설명과 같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뜻이 다르지 않다면, 상위법과의 용어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성평등’ 용어를 법률용어에 맞게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개정과정에서도 법률제명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합의되게 된 데는,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제3의 성(동성애자 또는 성적 지향이 다른 자 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어 또 다른 성불평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현실에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정책적 혼란의 발생이 우려되고, 법리적으로 최고 규범인 헌법 제11조<sup>2)</sup> 및 제36조<sup>3)</sup>에 따른 ‘양성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부합하다는 점을 들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되, 이미 정부의 정책 내용에 성평등으로 쓴 용어(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평등 지수 등)는 그대로 사용하는 혼용을 추진한바 있음<sup>4)</sup>.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개정안에서 제시한 ‘성평등’에 대한 용어의 뜻이 상위법에서의 ‘양성평등’과 같다면 되도록 상위법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울시의 의도대로 법 용어와 동일한 뜻을 지님을 설명하고 싶은 경우라면 이를 명확하고 정의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제2호 ‘성희롱’의 용어에 대하여 법 제3조 제2호의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다만, 이 경우 ‘성희롱’에 대한 정의규정이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또한 현행 조례상 ‘성희롱’과 관련된 조항은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가 유일하고 그 용어의 의미가 특별히 다른 용어와의 혼돈을 일으킬 만한 소지는 크지 않은바, 개정안에서 이를 생략하거나, 법 제3조제2호를 따른다고 규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2)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3)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4) 제324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1호(2014.4.28), 국회사무처; 이승미(2015),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검토 및 개선방향 연구, 여성가족재단, 동 자료에서 재인용

- 제3호 ‘성주류화(性主流化)’에 대한 용어와 관련하여, 학계의 개념과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sup>5)</sup>,
  -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란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성이 사회 전체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이 통합되어 사회발전의 목표와 원리, 운영방식과 절차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sup>6)</sup>,
  -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UN은 성 주류화를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하고 각국 정부에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상위 법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제14조)하고, 성 주류화 조치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15조), ‘성 인지 예산’(제16조), ‘성인지 통계’(제17조), ‘성 인지 교육’(제18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해볼 때, 개정안의 ‘성 주류화’의 적용분야가 서울시정이라는 행정체계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용어의 뜻이 다소 협소해 진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나. 분과위원회 회의규칙의 모순 및 분과위원회별 역할구분의 불분명 문제 등 (안 제12조 관련)

- 개정안에서는 제12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

5)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2014. 2) 인용

6) 김선욱, 2009,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와 법”, 젠더법학 창간호(2009년 3월).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선임방식 등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로 한다.</p> <p>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p> <p>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2.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일자리, 보육,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성평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p> <p>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p> <p>⑤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총 37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별첨 참고자료: 현재 전체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 금번에 제출된 개정안(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상기의 전체위원회와 별도로 ①성주류화 분과위원회, ②정책개발 분과위원회, ③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①성주류화 분과위원회와 ②정책개발 분과위원회는 현행의 시행규칙에 명문화되어 운영되어오던 것을 조례로 상향명문화 시킨 것임.
  - 또한, ③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의 경우, 지난 2015년 2월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제13조의2<sup>7)</sup>)됨에 따라, 이의 이행을 위하여 현재의 전체위원회 소관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신설·운영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인바, 이상의 개정 사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짐.
- 하지만, 문제는 분과위원회의 구체적 운영 규칙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의 전체위원회 회의 규칙과 상충하고 있는 점이 발견됨.
  - 즉, 전체위원회의 회의 규칙은 현행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과반수의 출석에 따른 개의조건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조건은 회의가 갖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

7)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그런데, 이어지는 현행 조례 12조제2항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분과위원회의 회의 규칙이 전체위원회의 대 전제인 민주적 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더욱이, 금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12조제3항에 따라 3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각 개별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위원이 참석하여 모두가 찬성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위원회 총수(현재 37명으로 구성 됨)의 과반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됨.
  -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전체회의의 규칙과 분과위원회의 운영규칙 간 상호모순 되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안 제12조제4항에서 구분한 3개의 분과위원회는 큰 틀에서는 3개의 모든 분과위원회가 ‘성평등’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분과위원회별 역할의 구분이 일정부분 중복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제출된 개정안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그 기능이 매우 중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의 재분류 또는 제명 조정 등(예시. 기존 성주류화 분과위원회를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 등)의 고려가 필요해 보임.

#### **다. 성인지 교육기관 자격요건의 구체화 필요 (18조의2 관련)**

- 안 제18조의2는 시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신설>

제18조의2(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동 규정은 법 제18조(성인지 교육)<sup>8)</sup> 및 시행령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 기관)<sup>9)</sup>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서 다시 한번 명문화 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기 법령에서는 성인지 교육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④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성인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함으로써 자칫 수탁기관에 대한 확대 해석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라. 실제 행정조직 용어로의 사용 권장 (안 제40조, 제42조)

- 개정안에서는 안 제2호의2(정의), 제27조(성평등주간 행사 등),

8) 「양성평등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양성평등법」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제5장 제명,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2조(사전협의)조항에서 기존의 ‘여성주간’, ‘여성발전기금’ 등의 명칭을 ‘성평등 주간’, ‘성평등 기금’ 등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기존 용어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적 범주로서의 젠더 관점에 더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통일한 것으로 설명함. 이는 성평등을 촉진을 위한 목적에도 부합하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현행	개정안
<b>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b>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u>여성정책관련</u> 상임위원회 위원 2. • 3. (생 략)	<b>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b>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u>성평등정책 관련</u> ----- ----- 2. • 3. (현행과 같음)
<b>제42조(사전협의)</b>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u>여성정책</u>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b>제42조(사전협의)</b> ----- ----- ----- ----- ----- <u>성평등정책</u> ----- -----.

- 다만, 이상의 긍정적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성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현존하는 행정조직(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의 실제 명칭과의 괴리가 발생하여 다소 용어의 부자연스러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

- 예를 들어, 안제40조제3항제]1호 의 “서울시특별시의회 여성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을 “서울특별시의회 성평등정책관련 상임위원회”로 하거나, 안 제42조의 “(서울시)여성정책 관련 부서”를 “(서울시)성평등정책 관련 부서”로의 변경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마. 기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서울시 내부검토 과정의 내실화 필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성평등 기본계획의 내실화 등을 통한 정책추진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봄.
-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정안의 내용이 갖는 상위법 정의와의 충돌문제, 현행 조례 규정과의 모순문제, 법체계상의 미비점 등 다수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더욱이, 동 개정안의 준비를 위해 아래<표>와 같이 다양한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음.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개정 추진을 위한 서울시 내부 점검 절차>

1. 실무부서 초안 검토
2. 여성가족재단 자체학술용역 의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검토 및 개선방향’ (여성가족재단)
3. 실무부서 개정안 마련
4. 개정안 입법예고
  - 6월 23일 ~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관련 단체 의견 수렴
5.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상정
6. 법제심사의뢰(공문)
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8. 시의회 제출

- 특히, 상위법이나 현행조례 규정과의 상충문제는 실무부서 뿐만 아니라 법제심사 의뢰 단계에서,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견 없음(조례규칙심의회(2016. 7. 28일자 회의))”으로 의결 되었던바, 향후 조례 제·개정을 위한 서울시 내부 검토 각 단계마다의 보다 내실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짐.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개정안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뜻은, 상위법에서의 ‘양성평등’의 뜻과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으므로, 법률상 용어의 혼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 개념의 뜻을 보다 분명히 정의할 필요 있음.
- 분과위원회의 회의규칙이 성평등(전체)위원회의 회의 규칙을 위배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수정이 필요함.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1.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구성 (2016년 8월 현재)

번호	구 분(분야)	성 명	현재 직위	비 고
1	공동위원장	박 00	서울특별시장	당연직
2	"	정 00	성균관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위촉직
3	부위원장	엄 0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당연직
4	내 부 위 원	장 00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
5	"	서 00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장	"
6	"	남 00	서울특별시 복지본부장	"
7	"	강 00	서울특별시 행정국장	"
8	"	전 00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
9	시의원	이 0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촉직
10	"	김 0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
11	성주류화	배 00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12	성별영향	신00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13	정책개발	이00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4	과학·경제	이00	현대리서치 사장	"
15	과학·경제	백00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
16	과학·경제	권00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17	복지·행정	송00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8	복지·행정	배00	장애여성공감대표	"
19	시민사회	박봉00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20	시민사회	조00	서울YWCA회장	"
21	시민사회	권00	서울특별시약사회 여약사회장	"
22	시민사회	고00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23	시민사회	이00	(사)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회장	"
24	시민사회	임00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
25	시민사회	유00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26	시민사회	전00	살림의료협동조합이사	"
27	언론문화	최00	토크콘설팅 대표	"
28	언론문화	안00	서울시 우먼리포터	"
29	언론문화	김00	한국영상대 교수	"
30	여성가족	김00	명예부시장	"
31	여성가족	강00	여성가족재단 대표	"
32	여성가족	박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원	"
33	여성가족	온00	외국인명예부시장	"
34	여성가족	오00	청년유니온사무국장	"
35	법률	조00	변호사	"
37	법률	이00	변호사	"

□ 별첨2.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개최 현황

① '12년 - 8회(전체회의 2, 분과회의 6)

개최일	위원회명	개최내용
'12. 2.28.	위촉식 및 전체회의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보고 및 토론
'12. 3.22.	성주류화 분과회의	여성정책비전 10대 핵심과제 선정 등
'12. 4.12.	성주류화 분과회의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토론
'12. 4.27.	정책개발 분과회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등 토론
'12. 6.22.	성주류화 분과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등 검토
'12. 7. 9.	전체회의	여성정책비전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등 토론
'12.10.12.	성주류화 분과회의	여성일자리 창출 성과 및 '13년 여성실 소관 예산 보고 등
'12.11.12.	정책개발 분과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보고 및 토론

② '13년 - 7회(전체회의 2, 분과회의 5)

개최일	위원회명	개최내용
'13. 1.31.	전체회의	여성비전 추진실적 및 '13년 계획 보고
'13. 4. 9.	정책개발 분과회의	여성비전 추진상황 보고(일가정 양립 및 보육분야)
'13. 4.16.	성주류화 분과회의	여성비전 추진상황 보고(실질적 성평등 및 여성 건강분야)
'13. 6.17.	성주류화 분과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10대 중점 사업 선정
'13. 7.17.	성주류화 분과회의	여성비전 추진실적 및 '14년 신규사업(안) 보고
'13. 7.23.	정책개발 분과회의	여성비전 추진 실적 및 '14년 신규사업(안) 보고
'13. 9.12.	전체회의	여성비전 '13년 상반기 추진상황 및 '14년 신규사업(안) 논의

③ '14년 - 4회(전체회의 2, 분과회의 2)

개최일	위원회명	개최내용
'14. 3.20.	전체회의	2기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선출, 안건 보고(여성비전 성과 등 3건) 및 토론
'14. 5.20.	정책개발 분과회의	분과위원장 선출, 안건 보고(성폭력추방 공동대책 추진 상황 등 4건) 및 토론
'14. 5.23.	성주류화 분과회의	분과위원장 선출, 안건 보고(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등 5건) 및 토론
'14. 8.29.	전체회의(워크숍)	민선6기 여성정책 제안, '15. 여성실 부서별 주요 사업 등
'14. 10.29.	성주류화 분과회의	젠더거버넌스 추진상황 보고 등

**(4) '15년 – 8 회(전체회의2 , 분과회의 6)**

개최일	위원회명	개최내용
'15. 2.10.	성주류와 분과회의	젠더옴부즈만 실행TF 보고 및 민선6기 여성정책 추진계획
'15. 2.11.	정책개발 분과회의	젠더옴부즈만 시범운영 성과보고 및 토론
'15. 3. 4.	전체회의	젠더옴부즈만 시범운영 결과보고 및 제언
'15. 6. 1.	성주류화 분과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및 젠더옴부즈만 추진상황 보고
'15. 7. 17.	정책개발 분과회의	서울형 중장기 가족정책 종합계획 보고 및 여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추진현황 보고
'15.10.15.	정책개발 분과회의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 및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사업 추진 현황 보고
'15.10.23.	성주류화 분과회의	2015년 젠더자본스 추진현황 보고 및 재정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
'15. 11. 17.	전체회의	민선 6기 1주년 여성정책 공약 추진 성과 및 계획

**(5) '16년 – 9회(전체회의2 , 분과회의 7)**

개최일	위원회명	개최내용
'16. 2.23.	정책개발 분과회의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 보고 및 3.8세계여성의 날 대책 논의
'16. 3.28.	전체회의	3기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선출, 여성비전 성과 및 토론
'16. 5. 4.	정책개발 분과회의	성평등위원회 운영 발전계획 보고, 서울시 성평등지수 운영방안 논의
'16. 5. 11.	성주류화 분과회의	서울시 성평등지수 운영방안, 서울시 50플러스 사업보고 논의
'16. 5. 18.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회의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논의
'16.7.13.	전체회의	함께서울포럼-주요 여성가족정책평가결과 보고 및 논의
'16.8.3.	정책개발 분과회의	여성안전대책의견수렴-연령별여성안전 연속좌담회 결과 관련
'16.8.10.	성주류화 분과회의	2016 서울시 성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16. 8. 17.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회의	인쇄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시행 관련 보고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1311
----------	---------

제안일: 2016년 9월 2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의 회의규칙과 분과위원회의 회의 규칙간의 상충문제를 해소하며, 입법취지에 맞도록 ‘여성주간’을 ‘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고, 기타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자구수정 함.

## 2. 수정의 주요내용

- ‘성평등’ 및 ‘성주류화’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1조의2)
- 분과위원회 회의규칙이 성평등(전체)위원회의 회의규칙과 상충하지 않도록,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 함 (안 제12조)
- 성인지교육 전문기관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으로 구체화함 (안 제18조의2)
- 입법취지에 맞도록 ‘여성주간’을 ‘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함(안 제27조)
- ‘성평등’ 용어의 통일적 사용으로, 현재의 집행부 조직 명칭등과의

거리가 있고 부자연스러운 용어는 기준대로 사용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제42조)

- 기타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자구수정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안제12조제2항)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의2 중 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안 제5조제2항제4호 중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다음 같이 하고,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

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 제18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범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27조 중 제명의 “여성주간”을 “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안 제40조 제3항 제1호의 “성평등정책관련”을 “여성정책관련”으로 한다.

안 제42조 중 “성평등정책”을 “여성정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조례안
<p><b>제1조 (목적)</b></p> <p>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의2 (정의)</b></p> <p>(신설)</p>	<p><b>제1조 (목적)</b></p> <p>----- 「양성평등기본법」</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b>제1조의2(정의)</b></p> <p>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li> <li>“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li> </ol>	<p><b>제1조 (목적)</b></p> <p>(개정안과 같음)</p> <p><b>제1조의2(정의)</b></p> <p>-----</p> <p>-----</p> <p>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p> <p>2.(개정안과 같음)</p>

	<p><u>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u></p> <p><u>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u></p> <p><u>3.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p>	<p><u>3.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성평 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u></p>
<b>제2조 (시의책무)</b>	<b>제2조 (시의책무)</b>	<b>제2조 (시의책무)</b>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 ----- ----- ----- 「양성평등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 ----- ----- ----- -----.	(개정안과 같음)
<b>제5조 (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수립)</b>	<b>제5조(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수립)</b>	<b>제5조(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수립)</b>
	①-----	① (개정안과 같음)



	<p>다. 정치, 사회참여 성별격차 해소 라. 성평등 문화 확 산 마. 여성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 장하는 기축생활 지 원 사.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아.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p>	
③~⑤ (생략)  제6조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③~⑤ (현행과 같음)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③~⑤ (개정안과 같음)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관련 사 업의 조정 및 협력에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점검  3. (현행과 같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7. (개정안과 같음)

<p>관한 사항</p> <p><u>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u></p> <p><u>5.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p><u>제12조(분과위원회)</u></p> <p>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③ &lt;신설&gt;</p>	<p><u>4.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u></p> <p><u>5. (현행 제4호와 같음)</u></p> <p><u>6. 여성시설</u> -----</p> <p><u>7.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u>제12조(분과위원회)</u></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2. 분과위원회의 위원</u></p>	<p><u>제12조(분과위원회)</u></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 (개정안과 같음)</p>
--	--	--

제18조의2 (성인지교육)  
(신설)

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 일자리, 보육,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성평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의 성별 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⑤ 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성인지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

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③ (개정안 4항과 같음)

④ (개정안 5항과 같음)

제18조의2 (성인지교육)

① (개정안과 같음)

	<p><u>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아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제27조 (여성주간 행사 등)	<p><u>제27조 (여성주간 행사 등)</u></p> <p><u>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u></p>	<p><u>제27조 (성평등주간 행사 등)</u></p> <p><u>① (개정안과 같음)</u></p> <p><u>② (현행과 같음)</u></p>
제2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p><u>제2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u></p> <p>-----</p>	<p><u>제2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u></p> <p><u>(개정안과 같음)</u></p>

<p>-----<u>여성발전기금</u>-----.</p> <p>제5장 (<u>여성발전 기금</u>)</p> <p>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p> <p>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u>(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운용계획</li> <li>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li> <li>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li> <li>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li> <li>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p>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의회 <u>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u> 위원</li> </ul>	<p>-----<u>성평등기금</u>-----.</p> <p>제5장 (<u>성평등 기금</u>)</p> <p>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p> <p>①-----</p> <p>-----<u>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u>-----.</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p>1. 서울특별시의회 <u>성평등</u></p>	<p>제5장 (<u>성평등 기금</u>)</p> <p>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p> <p>①(개정안과 같음)</p> <p>1. 서울특별시의회 <u>여성정책</u></p>
--	--	---

<p>2. 위원회 위원</p> <p>3.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p> <p>⑦ 기금의 자금은 시금 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p> <p>⑧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40조의2(준용)</b>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p>	<p><u>정책관련</u> 상임위원회 위원</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④~⑧ (현행과 같음)</p>	<p><u>관련</u> 상임위원회 위원</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④~⑧ (개정안과 같음)</p>
	<p><b>제 4 0 조 의 2 ( 준 용 )</b></p>	<p><b>제40조의2(준용)</b> (개정안과 같음)</p>

<p>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p>
<p>제42조(사전협의)</p>	<p>제42조(사전협의)</p>
<p>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p>	<p>성평등정책</p>
<p>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여성정책</p>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 표시를 하는 행위

3.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조달방법”을 “조달 및 운용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

-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나. 돌봄 분담과 일가족양립 기반 구축
- 다. 정치, 사회참여 성별격차 해소
- 라. 성평등 문화 확산
- 마. 여성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 사.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아.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제6조 제2항 제2호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중 제2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 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 일자리, 보육,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성평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④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중 제명의 “여성주간”을 “성평등주간”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를 “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로 하고, “여성주간”을 “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29조 중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명 중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제40조의2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1조 (목적)</b></p> <p>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b>제1조 (목적)</b></p> <p>----- 「양성평등기본법」 -----</p> <p>-----</p> <p>-----</p> <p>-----</p> <p>-----</p> <p>-----</p> <p>-----</p> <p>-----</p> <p>---</p>
	<p><b>제1조의2(정의)</b></p> <p>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li> <li>“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li> </ol> <p>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p> <p>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p>

## 제2조 (시의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 제5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 2.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 라.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기준생활 지원
- 사.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 아. 그 밖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

3.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제2조 (시의책무)

-----  
-----  
-----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  
----- 성평등-----  
-----  
-----.  
② -----  
-----.  
1. (현행과 같음)

###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아. 까지 삭제)

3.-----

## 달별법

(신설)

### 조달 및 운용방향

#### 4.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

-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나. 돌봄 분담과 일가족양립 기반 구축
- 다. 정치, 사회참여 성별격차 해소
- 라. 성평등 문화 확산
- 마. 여성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 지원

- 사.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아.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 사업

③~⑤ (생 략)

### **제6조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⑤ (현행과 같음)

###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한 사항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

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 제12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 에 관한 사항

### 6.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

#### 요한 사항

## 제12조(분과위원회)

- ① (개정안과 같음)
-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p>(신설)</p> <p>(신설)</p>	<p><u>2.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 일자리, 보육,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성평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u></p> <p><u>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u></p> <p><u>④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b>제18조의2 (성인지교육)</b></p> <p>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b>제27조 (여성주간 행사 등)</b></p> <p>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b>제2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b></p> <p>-----</p> <p>-----</p>	<p><b>제27조 (성평등주간 행사 등)</b></p> <p>①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성평등주간----- ----- -----.</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2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b></p> <p>-----</p> <p>-----</p>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발전 기금)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제40조의2(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성평등기금---

제5장 (성평등 기금)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  
-----.

1. ~5. 생략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준용) -----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  
-----.